## 기준 3.2.5

신체보호대와 격리 · 강박을 적절하고 안전하게 시행한다.

## 조사 목적

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 존중 및 안전을 위해 신체보호대 사용, 격리·강박 시행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고, 올바르게 사용한다.

## 조사항목

조사항목		구분	상급	종합	병원	조사결과
1	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다.	S	정규	정규	정규	□상 □중 □하
2	신체보호대를 적절하게 사용한다.	Р	정규	정규	정규	□상 □중 □하
3	격리 및 강박에 대한 규정이 있다.	S	정규	정규	정규	□상 □중 □하 □미해당
4	격리 및 강박을 적절하게 시행한다.	Р	정규	정규	정규	□상 □중 □하 □미해당

## 기준의 이해

- ※ (ME.3-4) 미해당 적용대상: 보호실\*이 없어 격리를 시행하지 않는 '의료기관'
  - \* 「정신건강복지법」에 따라 설치 의무가 없어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인정
- 1)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.
-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
  -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체보호대 사용
  -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
  -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가 해소된 경우 중단
- 신체보호대 종류 및 사용 방법
  - 응급상황에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 사용
- 신체보호대 사용 절차
  - 의사의 처방 :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, 방법, 신체 부위, 종류 등
  - 환자 또는 보호자 설명 및 동의서 작성 :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, 방법, 신체 부위 및 종류, 처방한 의사와 설명한 의료인의 이름 및 처방·설명 날짜, 보호자가 대신 동의하게 된 사유 등
  -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의 주기적 관찰 및 평가, 기록
  - 부작용 발생 예방을 위한 활동
  - 부작용 발생 시 중재

- 관련 직원 교육
- 2) 규정에 따라 신체보호대를 적절하게 사용한다.
- 3) 격리 및 강박 규정은 관련법을 준수하며,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.
- 대상 :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
- 격리·강박 시행 기준
  -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
  - 가급적 최소의 시간동안 시행, 격리·강박 시행 사유가 해소된 경우 중단
- 강박 도구 종류 및 관리 방법
  - 종류 : 보호복, 억제대(2Point, 3point, 4Point, 5point 이상), 보호조끼 등
  - 강박 도구 관리 방법
- 격리·강박 시행 절차
  -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
  - 시행 전·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설명 및 동의
  - 공간 : 격리(강박)실(법령에 따른 보호실)로 명시된 공간에 입실, 구조 및 관리 방법
  - 수행 직원 : 의료인(의사·간호사)이 포함된 2명 이상의 훈련된 직원
  - 시행시간 기준, 연장 평가 및 시행시간 기준, 다학제평가팀 구성 · 운영
  - 격리·강박 기록 : 격리·강박기록지\*, 진료기록, 간호기록 등
    - \* 정신건강사업안내 별지 제IV-4-1호
    - · 시행/해제일시, 지시자 및 수행자의 이름과 서명, 참여자명
    - ·시행 필요 이유, 구체적 상황(필요시), 모니터링 내용, 연장 이유 및 기록
  - 격리·강박 시행 환자 모니터링
    - · 관찰 주기, 간호사정 내용\* 등
    - \* 예시 : 혈액순환상태(피부색), 활력징후(혈압, 맥박, 체온, 호흡), 자세, 활동, 외상, 위험행동 여부 등
  - 부작용 발생 예방을 위한 활동\*
    - \* 예시 : 규칙적으로 억제대 풀어 놓기, 능동적·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, 자세 변경 등
  - 부작용 발생 시 중재 방법
- 관련 직원 교육
- 4) 규정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을 적절하게 시행한다.